

인천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나71703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나7170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가단2225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우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선

변론종결 2023. 3. 10.

판결선고 2023. 4. 1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가단22257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① 원고는 2021.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주소를 “전주시 완산구 J”으로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분 등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 ② 원고는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K, L호”(이하 ‘피고의 현주소지’)로 보정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피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J’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26. 피고의 현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 ③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분 등을 피고의 현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우편송달 통지서에는 2021. 5. 4. M이 피고의 서무계원으로서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④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의 현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고, M이 2021. 6. 15.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 ⑤ 제1심법원은 2021. 7. 8.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1)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을 2021. 7. 9. 피고의 현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이 역시 M이 2021. 7. 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⑥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난 2021. 8. 11.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M에게 교부되었을 뿐이어서 그 송달은 부적법하고, 피고는 2021. 8. 6.에서야 M으로부터 제1심판결 정본을 전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주소지로 보낸 이 사건 소장 부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 제1심판결 정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송서류’)이 모두 피고의 사무원인 M에게 송달되었고, 위 송달은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므로, 제1심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난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참조),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서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참조).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이 소송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을 사람이 위 서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그 시기는 송달의 효력에 관계가 없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822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참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사건 각 소송서류를 송달하였고 이를 피고의 서무계원이라고 밝힌 M이 모두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소송서류는 M이 수령한 때에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는 2021. 4. 26. 피고의 현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주소지에 상주하는 M의 허락을 받아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M은 그로부터 8일 후인 2021. 5. 4. 자신을 피고의 서무계원이라고 밝히고 피고의 현주소지로 송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수령하고, 그 후 피고에게 송달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 제1심판결正本도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였으므로, M은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에 따라 피고의 우편물 수령에 관한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로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위와 같이 M이 피고를 대신해 이 사건 각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달리 M이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각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송서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M에 대한 이 사건 각 소송서류의 송달은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항소장은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21. 7. 14.로부터 2주를 넘긴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1.에서야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현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거나 M으로부터 제1심판결 정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소송서류를 곧바로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제1심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 승 환, 판사 봉 지 수, 판사 박봄빛누리

1)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